

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토지등소유자 의견수렴 조사

강북구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제12호의 추진주체 구성 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강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공고명칭 :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 토지등
소유자 의견수렴 조사

3. 의견제출 기간 : 2026. 7. 3.(금) ~ 2026. 8. 3.(월) 18:00까지

4. 의견제출 장소

-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강북구 도봉로 358, 8층 / ☎ 02-901-2553)

5. 의견제출 방법 : 본 공고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의견서 및 개인정보 제공
동의서 작성 후 강북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, 등기우편 등
한가지 방법으로 제출

붙임 1. 토지등소유자 의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.

2. 조합 직접설립 제도 안내문 1부. 끝.

<붙임 1>

미아동 15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주체 구성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동의서

I.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

인 적 사 항	성 명		생년월일	
	주민등록상 주 소		전화번호	
소유권 현 황	관리 내역	토지	소재지 (공유여부)	면적(㎡)
			(계 필지)	
			()	
			()	
		건축물	소재지 (허가유무)	동 수
			()	
			()	
			지상권 (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)	설정 토지

II. 추진주체 구성 방식 토지등소유자 의견(둘 중 한 곳에만 동의 여부 체크)

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	② 조합직접설립 동의
()	()

※ 조합직접설립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50% 미충족 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추진주체 구성

※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구성될 경우 주민갈등, 유착비리 발생, 사업지연 등 우려 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을 적용

년 월 일

위 동의자: _____ (서명 또는 인)

강북구청장 귀중

신청인 제출서류	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강북구에서는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 를 받고 있습니다.

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강북구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
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 의견 조사
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추진주체 구성 이후 2년까지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
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? (예)

년 월 일

제 출 인 :

(서명 또는 인)

■ 조합 직접설립 제도 안내문

조합 직접설립 제도란?

- ▶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「추진위원회 구성 단계」 생략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직접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제도
 -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「추진위원회 구성 단계」 생략이 가능하며,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음
- ▶ 비용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
 - 추진위원회 운영비,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비용 등 정비사업비 절감 가능
 -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가능

※ 조합 직접설립 제도 홍보 리플릿 내용 발췌(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참고)

■ 조합 직접설립 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



※ 조합 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시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,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

※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

■ 조합 직접설립 및 추진위원회 방식 비교

구분	조합 직접설립 방식	추진위원회 방식
구성요건	공공지원자(구청장) 구성	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 승인
위원장	정비사업전문가를 공공지원자가 위촉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중 선출	토지등소유자 중 선출
회의운영	소집 :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 회의종류 : 주민협의체, 주민설명회	소집 : 추진위원장 회의종류 : 추진위원회, 주민총회
주요업무	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	협력업체 선정(정비업체, 설계자 등)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
비용부담	토지등소유자의 예산 절감	추진위원회 운영시 사용되는 비용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

※ '25.6.4.일 시행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(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·승인)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지 아니한 지역도 요건 충족시 지정·고시 이전 추진위 설립이 가능함 '(25.1.31, 일부개정 및 '25.6.4, 시행)